

증여세과세표준서 및 자지납부계산서

(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)

[]기한 내 신고 []수정신고 []기한 후 신고

(앞쪽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수증자 | ① 성명 | ② 주민등록번호 | ③ 거주구분 | [] 거주자 []비거주자 |
| | ④ 주소 | ⑤ 전자우편주소 | | |
| | ⑥ 전화번호 | (자택) (휴대전화) | ⑦ 증여자와의 관계 | |
| 증여자 | ⑧ 성명 | ⑨ 주민등록번호 | ⑩ 증여일자 | |
| | ⑪ 주소 | | ⑫ 전화번호 | (자택) (휴대전화) |
| 세무대리인 | ⑬ 성명 | ⑭ 사업자등록번호 | ⑮ 관리번호 | |
| | ⑯ 전화번호 | (사무실) (휴대전화) | | |

| 구 분 | | 금 액 | 구 분 | | 금 액 |
|--|--|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⑯ 증여재산가액 | | | 세액공제 | ⑯ 세액공제합계 (⑯ + ⑰ + ⑱ + ⑲ + ⑳ + ㉑) | |
| ⑯ 비과세재산가액 | | | | ⑯ 기납부세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8조) | |
| ⑯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) | | | | ⑯ 외국납부세액공제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9조) | |
| ⑯ 공익신탁재산가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2조) | | | | ⑯ 신고세액공제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9조) | |
| ⑯ 장애인신탁재산가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2조의2) | | | | ⑯ 그밖의공제·감면세액 | |
| ㉒ 채무액 | | | ㉒ 신고불성실가산세 | | |
| ㉓ 증여재산가산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제2항) | | | ㉓ 납부지연가산세 | | |
| ㉔ 증여세과세가액 (㉑ - ㉒ - ㉓ - ㉔ - ㉕ - ㉖ + ㉗) | | | ㉔ 공익법인등관련가산세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8조) | | |
| ㉔ 배우자 | | | ㉔ 자진납부할세액(합계액) (㉔ + ㉕ - ㉖ - ㉗ + ㉘ + ㉙ + ㉚) | | |
| ㉔ 직계존비속 | | | ㉔ 납부방법 | 납부 및 신청일 | |
| ㉔ 그밖의친족 | | | ㉔ 연부연납 | | |
| ㉔ 재해손실공제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4조) | | | ㉔ 분납 | | |
| ㉔ 감정평가수수료 | | | ㉔ 신고납부 | | |
| ㉔ 과세표준(㉔ - ㉕ - ㉖ - ㉗ - ㉘ - ㉙) | | |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기준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| | |
| ㉔ 세율 | | | 신고인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 | | |
| ㉔ 산출세액 | | |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| | |
| ㉔ 세대생략가산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7조) | | | 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 | | |
| ㉔ 산출세액계(㉔ + ㉔) | | | 세무서장 귀하 | | |
| ㉔ 이자상당액 | | | | | |
| ㉔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| | | | |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 | 1.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(부표) 1부 2. 채무사실 등 그밖의 입증서류 1부 | 수수료 없음 |
|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| 1. 주민등록표등본 2.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| |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,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- "② 주민등록번호" 및 "⑨ 주민등록번호"란: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)를 적습니다.
- "③ 거주구분"란: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표시합니다.
* "거주자" 및 "비거주자"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"란: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. (예시 : 부모(증여자)가 자녀(수증자)에게 증여하는 경우 : 자)
- "⑬ 성명"부터 "⑯ 전화번호"란 :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.
- "⑰ 증여재산가액"란 :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0 부표)의 "⑩ 증여재산가액"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[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) "⑯ 계"의 금액]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"⑰ 증여재산가액"
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에 따른 기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[기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) "⑯ 계"의 금액]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"⑰ 증여재산가액"
- "⑯ 채무액"란 :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[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) "⑯ 계"의 금액]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"⑯ 채무액"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"㉖ 배우자"란부터 "㉗ 그 밖의 친족"란: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
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배우자 : 10년간 6억원 | (2008.1.1. 이후 증여분부터) |
| 나. 직계존비속 :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/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| (2014.1.1. 이후 증여분부터) |
| 다. 그 밖의 친족* : 10년간 1천만원 | (2016.1.1. 이후 증여분부터) |

*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
- "㉙ 세율", "㉚ 산출세액"란: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* 산출세액 = (과세표준 × 세율) - 누진공제액

<증여세 세율표>

| 증여재산 구분 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가. 창업자금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) | 25억원 이하* | 10% | - |
| | 30억원 이하 | 10% | - |
| | 30억원 초과 95억원 이하 | 20% | 30,000만원 |
| 나. 기업승계 주식 등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) | 1억원 이하 | 10% | - |
| |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20% | 1,000만원 |
| 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30% | 6,000만원 |
| |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| 40% | 16,000만원 |
| | 30억원 초과 | 50% | 46,000만원 |
| | | | |
| 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*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: 45억원 이하

- "㉛ 이자상당액"란 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"㉜ 신고불성실가산세"란부터 "㉝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"란 :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,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.
- "㉞ 연부연납"란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. 이 때, 상속세(증여세) 연부연납 허가신청서(별지 제11호서식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"㉟ 분납"란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(예정)일자를 적습니다.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
- "㉛ 신고납부"란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.

| | |
|------|---|
| 관리번호 | - |
|------|---|

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

(앞쪽)

첨부서류

증여재산 증명서류
[예: 주주(증권계좌)번호 및 잔고증명서, 예금통장 사본 등]

수수료
없음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작성방법

1. "① 재산구분코드"란 :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.

| 재산구분 | 증여재산 (영농농지) | 증여재산가산 | 비과세재산 (금양임야) | 비과세재산 (문화재 등) | 비과세재산 (기타) | 과세기액불산입 (공익법인 출연재산) | 과세기액불산입 (공익신탁 재산) | 과세기액불산입 (장애인 신탁재산)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코드 | A11 | A14 | A21 | B11 | B12 | B13 | B21 | B22 | B23 |

2. "② 재산종류코드"란 :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.

| 재산구분 | 현금 | 토지 I (순수토지) | 토지 II [일반건물(07)의 부수토지] | 개별주택 (부수토지 포함) | 공동주택 (부수토지 포함) | 오피스텔·상업 용건물 (부수토 지 포함) | 일반건물* (부수토지 제외) |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| 유가증권 (상장) | 유가증권 (비상장) | 금융재산 (현금, 유가증권 제외) | 기타재산 (01~11유형 제외)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코드 | 01 | 02 | 03 | 04 | 05 | 06 | 07 | 08 | 09 | 10 | 11 | 12 |

*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~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

3. "③ 소재지·법인명 등"란 :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.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·법인명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.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.

가.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: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(예시 :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)을 적습니다.

나.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: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(예시 : 보험금인 경우 □□생명 △△보험 / 유가증권인 경우 주○○건설)을 적습니다.

4. "④ 사업자등록번호(지분)"란 : "② 재산종류"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,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(예시: 증여자가 보유한 50% 지분 중 2분의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%로 기재)을 각각 작성합니다.

5. "⑤ 평가기준코드"란 :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.

| 평가기준 | 해당 재산의 매매기액 | 해당 재산의 감정기액 |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기액 |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기액 | 유사재산의 매매시례기액 등 | 현금 등 기액 | 자당권 등 평가특례기액 | 기준시가 등 보증적 평가기액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코드 | 01 | 02 | 03 | 04 | 05 | 06 | 07 | 08 |